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 안내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주자 모집공고(2023.12.01)상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 부담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표준약관 개정(2023.12.13)에 따라 사업주체와 계약당사자간 균등하게 연대납부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75,000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대상 및 납부기간·방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분	내용
납부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납부 기한 방법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납부 세액

과세문서	세액	수입인지가격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사업주체 7만 5천원 / 계약자 7만 5천원)

■ 온라인 신청 방법

1 해당 홈페이지 접속 →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인터넷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4 전자수입인지 출력



3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방문 전 해당처 확인 요망)

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7만 5천원)

3 전자수입인지 발급